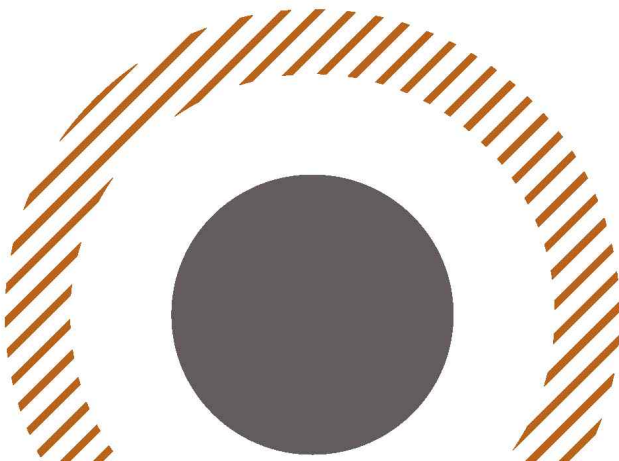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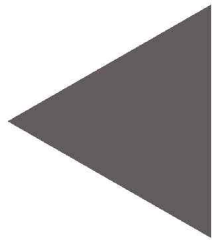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매뉴얼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자유 균형 미래 경기도교육청

CONTENTS

I 개요

1. 목적	3
2. 역할	3
3. 관련 법령	3
4.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절차	4

II 진단·평가

1. 근거	9
2. 목적	9
3. 진단·평가 절차	9

III 선정·배치

1. 신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17
2.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18
3.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취소	21
4. 특수교육대상자 유예(취학유예)	22
5. 특수교육대상자 면제	24
6. 특수교육대상자 재취학	25
7. 특수교육대상자 장애 유형 변경	27
8.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신청 및 철회 신청	28
9. 심사청구	29
10. 장애 영유아 진단·평가	30

IV 특수교육운영위원회

1. 개요	33
2.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기능과 법적 성격	33
3.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	35
4.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위원	36
5.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권한과 의무	38
6. 특수교육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40
7.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41

V 참고자료

1. 경기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51
2. 학적처리에 사용하는 용어	54
3.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특수교육법 시행령 별표)	55
4.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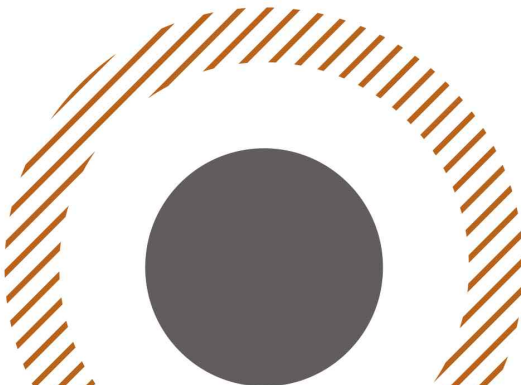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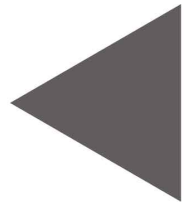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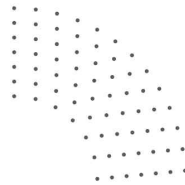
VI 서식 _ 61

VII Q&A _ 83

I

특수 교육 대상자 진단 · 평가 및 선정 · 배치 매뉴얼

개요



I. 개요

CONTENTS

1. 목적
2. 역할
3. 관련 법령
4.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절차

I

개요

1 목적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 정도와 교육적 요구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평가 및 적합한 교육환경 배치로 개별학생의 학습권 보장
- 특수교육대상학생 조기 발견 및 진단평가 체계 구축을 통해 교육기회 확대 및 체계적 특수교육 지원 기반 마련

2 역할

□ 진단·평가팀

진단·평가를 통해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특수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에 대한 기초자료 및 의견 제공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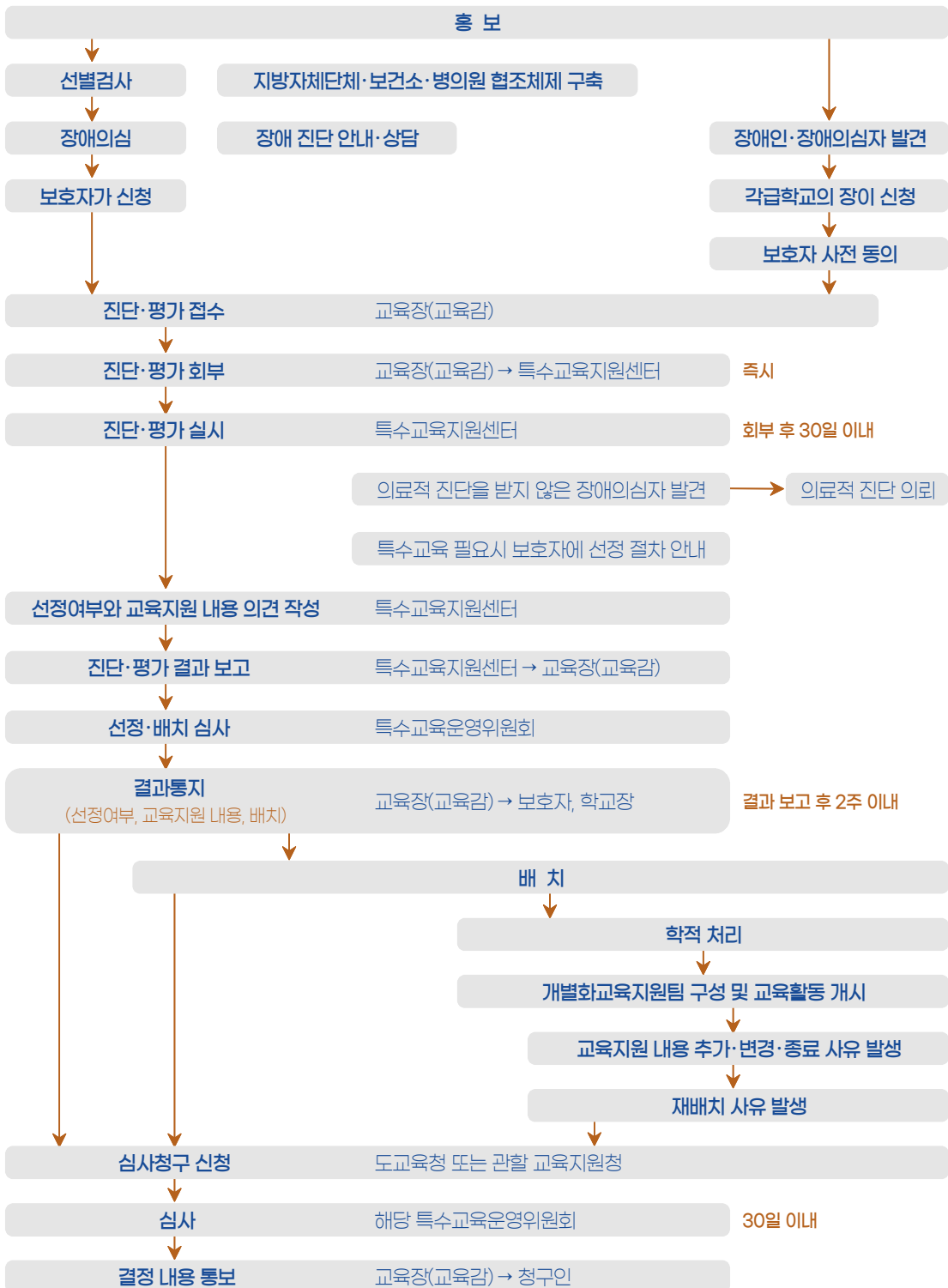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수교육 업무수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배치·심사청구 등을 심의·의결

구분	진단·평가 담당	선정·배치 기관
영·유아, 초·중학교	지역특수교육지원센터 (진단·평가팀)	시·군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시·군 교육장
고등학교	지역특수교육지원센터 (진단·평가팀)	경기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경기도교육감

3 관련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
- 초·중등교육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4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절차



가. 진단·평가 의뢰서 접수 및 회부

1) 진단·평가 의뢰서 접수

중학교 과정 이하는 교육장(해당지역 교육지원청), 고등학교는 교육감(경기도교육청)이 접수

2) 진단·평가 의뢰서 회부: 의뢰자 거주지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즉시 회부

나. 접수 명부 작성

- 1) 접수연월일, 성명, 생년월일, 학년, 주소, 연락처(보호자, 담임), 소속(졸업)교, 배치희망교, 장애의 유형 및 정도 등 대상자의 정보를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명부 작성

다. 진단·평가 실시 안내 및 관련기관 협조 의뢰

1) 진단·평가 일정 통보

보호자 및 학교장에게 진단·평가 실시 전 날짜와 시간, 장소 등을 사전 안내

2) 관련 기관 협조 의뢰

진단·평가 위원 소속 학교, 병원 및 보건소, 사회복지관 등 관련 기관에 공문을 발송하여 진단·평가 장소, 인력지원, 홍보 등을 협조 의뢰

라. 진단·평가 시행

- 1) 필요에 따라 진단·평가 협력기관 의뢰 및 병·의원 검사자료 요청
- 2) 평가 기한 :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실시

마. 진단·평가 결과 처리

- 1) 지적능력, 사회·정서적 능력, 신체적 능력, 면담(보호자, 학생), 관찰 결과 등을 결과 해석 자료로 활용
- 2)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진단·평가팀에서 제출한 보고서를 최종 검토 후 작성
- 3)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여부,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 의견 등을 작성
- 4) 결과 보고는 중학교 과정 이하 → 교육장, 고등학교 → 교육감에게 제출

바.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개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
■ 심사 의뢰: 보호자, 교육장(감)은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 의뢰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소집 안내 및 위원회 개최	■ 특수교육대상자 서류 검토 ■ 필요시 보호자 의견 수렴(전화, 면담, 이메일 등) ■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 지원 내용, 학교배치 등에 관한 심사

※ 「특수교육법」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에 배치

사. 진단·평가 및 배치 결과 통지

- 1)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진단·평가 결과보고서를 통지받은 때부터 2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과 배치 결과를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 2) 교육지원 내용에는 특수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을 포함

아. 심사청구

「특수교육법」 제36조(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심사청구)에 따라 이의가 있을 경우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도교육청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심사청구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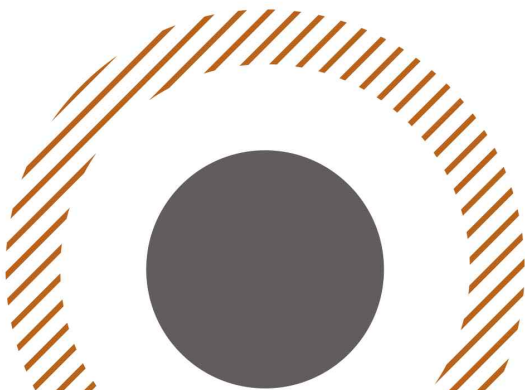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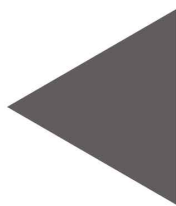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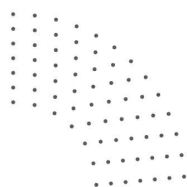
자. 심사청구 결과 통보

- 1)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 청구인에게 결과 통보
- 2) 심사청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

II

특수 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매뉴얼

진단·평가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매뉴얼

II. 진단·평가

CONTENTS

1. 근거
2. 목적
3. 진단·평가 절차

II

진단·평가

1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7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9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2 목적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여부 결정을 위한 전문성 확립
-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교육계획 및 적절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
-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내용에 대한 최종 의견 작성을 위한 정보 제공
- 의료적 진단의 의뢰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3 진단·평가 절차

가. 진단·평가 계획 수립

1) 계획 수립

- 가)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각급학교 및 유관 기관에 안내
- 나) 진단·평가팀 구성
- 다) 팀원에 대한 사전연수, 검사도구 및 서류 정비, 각종 자료 수집

2) 진단·평가팀 조직

가) 목적

- 진단·평가를 시행하여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여부 및 특수교육 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 의견 작성과 학생 개인의 개별화교육계획에 필요한 진단·평가 정보를 학교에 제공

나) 구성

- 진단·평가팀장은 담당장학사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 팀장으로 할 수 있음
- 진단·평가팀은 특수교사, 심리검사전문가, 치료지원전문가, 사회복지사, 상담사, 의사, 특수교육 관련 대학교수 등 진단·평가 전문가로 구성
- 장애영역별, 학교급별 특수교사와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할 진로직업 및 치료지원 등 관련서비스 전문가 포함하여 구성
※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전문가 등도 포함
- 진단·평가팀(예시)



다) 역할

-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조기 발견 및 선별 검사 실시
- 진단·평가 안내 및 상담을 통한 대상자 정보 수집 관리
- 진단·평가 의뢰된 학생의 진단·평가 시행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여부 및 특수교육 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 의견 작성·보고
-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

나. 진단·평가 신청

- 1)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그 보호자 및 각급학교의 장이 신청함
- 2) 각급학교의 장이 신청할 때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다. 의뢰서 접수 및 회부

- 1) 의뢰서 접수: 중학교 과정 이하는 교육장, 고등학교는 교육감이 접수
- 2) 의뢰서 회부: 의뢰자 거주지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즉시 회부

라. 접수 명부 작성

- 1) 진단·평가 업무 담당자는 공문 및 서류 접수 즉시 작성
- 2) 관련 서류 확인: 진단·평가의뢰서, 기초조사카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등
- 3) 접수 명부 내용: 접수연월일, 성명, 생년월일, 학년, 주소, 연락처(보호자, 담임), 소속 (졸업)교, 배치희망교, 장애의 유형 및 정도 등
- 4) 접수 명부 참고하여 대상자의 정보를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명부작성
(※ 교육지원청 서식에 따름)

마. 진단·평가 시행 안내 및 관련기관 협조 의뢰

1) 진단·평가 시행 안내

- 가) 진단·평가 업무 담당자는 보호자에게 진단·평가 전반적인 절차 안내
- 나) 보호자 및 학교장에게 진단·평가 실시 전 날짜와 시간, 장소 등을 사전 안내
- 다) 학생이 특수교육지원센터나 협력기관 방문 시 보호자 동반 등 안전 사항 확인

2) 관련 기관 협조 의뢰

- 진단·평가 위원 소속 학교, 병원 및 보건소, 장애인복지관 등 관련 기관에 공문을 발송하여 진단·평가 장소, 인력지원, 홍보 등을 협조 의뢰

바. 진단·평가 실시

- 1) 진단·평가는 회부 받은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실시
-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진단·평가 영역에 해당하는 검사를 각각 실시
- 3) 진단·평가 검사는 심리검사전문가 또는 병·의원 등의 협력기관에서 실시
- 4)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위한 장애유형별 진단·평가 시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진단서 등을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

심리검사전문가 자격기준

- 임상심리전문가
-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 2급
- 임상심리사 1, 2급
- 상담심리사 1, 2급
- 기타 「자격기본법」에 의한 심리검사 자격소지자

사. 진단·평가팀 협의

- 1) 심리검사 및 교육진단을 통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여부를 파악하고, 교육지원 내용(특수교육지원, 진로 및 직업교육,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에 대한 최종 의견을 제언하기 위해 실시
- 2) 진단·평가팀에서 제시한 의견(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은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아. 진단·평가 결과 처리

- 1) 지적능력, 사회·정서적 능력, 신체적 능력, 면담(보호자, 학생), 관찰 결과 등을 결과 해석 자료로 활용
- 2)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여부,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 의견 등을 작성
- 3) [서식11] 진단·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 진단·평가팀장 날인
 - 진단·평가결과보고서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보관(학생의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 4) 결과 보고는 중학교 과정 이하는 교육장, 고등학교는 교육감에게 제출
- 5) 학생의 진단·평가결과(진단검사 결과지, 심리학적평가보고서 등)를 보호자 또는 해당 학교에서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제공
 - 해당 자료는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센터에서 제공

구분		영역	주 검사도구	보조검사도구
장애 조기 발견을 위한 선별검사		1. 사회성숙도검사 2. 적응행동검사 3. 영유아발달검사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건강검진 등으로 대신함	
진단·평가 영역	시각장애, 청각장애 및 지체장애	1. 기초학습기능검사	KISE-BAAT	KEDI-IBLT
		2. 시력검사	1. 시각장애학교, 청각장애학교 자문 2. 전문병원에 검사 의뢰	
		3. 시기능검사 및 촉기능검사 (시각장애의 경우에 한함)		
		4. 청력검사 (청각장애의 경우에 한함)		
	지적장애	1. 지능검사(일반)	K-WISC-IV / V	KISE-KIT
		1. 지능검사(유아)	K-WPPSI	PTI
		2. 사회성숙도검사	SMS	
		3. 적응행동검사	KISE-SAB	K-ABS
		4. 기초학습검사	KISE-BAAT	KEDI-IBLT
		5. 운동능력검사	VMI	오세레츠키
	정서·행동 장애 자폐성장애	1. 적응행동검사	KISE-SAB	K-ABS
		2. 성격진단검사	MMPI / CARS / YSR 중 택1	
		3. 행동발달평가	K-CBCL	
		4. 학습준비도검사	학습준비도검사	
		5. 지능검사(일반)	K-WISC-IV / V	KISE-KIT
		6. 지능검사(유아)	K-WPPSI	PTI
		7. 사회성숙도검사	SMS	
	의사소통장애	1. 구문검사	구문의미이해력검사	
		2. 음운검사	U-TAP	
		3. 언어발달검사	PRES	SELSI
		4. 지능검사(일반)	'K-WISC-IV / V	KISE-KIT
		5. 지능검사(유아)	K-WPPSI	PTI
		6. 사회성숙도검사	SMS	
	학습장애	1. 지능검사(일반)	K-WISC-IV / V	KISE-KIT
		1. 지능검사(유아)	K-WPPSI	PTI
		2. 기초학습기능검사	KISE-BAAT	KEDI-IBLT
		3. 학습준비도검사	학습준비도검사	
		4. 시지각발달검사	K-DTVP-II	
		5. 지각운동발달검사	PMDT	
		6. 시작운동통합발달검사	VMI	
		7. 사회성숙도검사	S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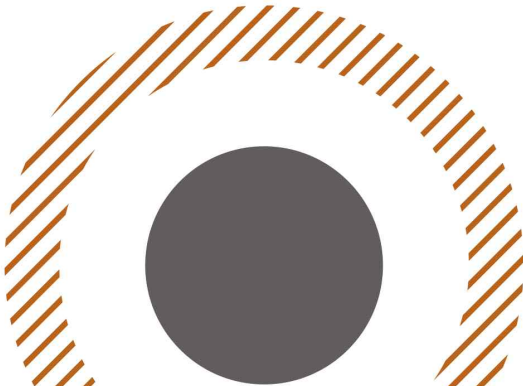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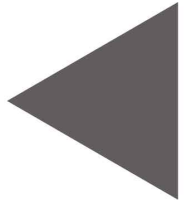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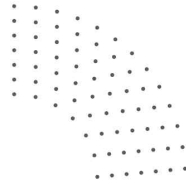


MEMO

III

특수 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매뉴얼

선정·배치



III. 선정·배치

CONTENTS

1. 신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2.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3.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취소
4. 특수교육대상자 취학유예(유예)
5. 특수교육대상자 면제
6. 특수교육대상자 재취학
7. 특수교육대상자 장애 유형 변경
8.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신청 및 철회 신청
9. 심사청구
10. 장애 영·유아 진단·평가

III

선정·배치

1 신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1)

가.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6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기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1조(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등)

나. 절차 및 제출서류

절차	제출서류
① 보호자가 학교장에게 신청서 제출 (※ 소속 학교가 없는 경우 보호자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직접 제출) ② 학교장이 교육장(감)에게 신청 ③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 실시 ④ 진단·평가결과를 교육장(감)에게 보고 ⑤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⑥ 심의 결과 통보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서식1] ■ 특수교육대상자 기초조사 카드 [서식2]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식10] ■ 기타 사항(해당자만 제출) (기타 서류 예시) - 복지카드 사본(교감 원본대조필) 또는 장애인증명서 - 의사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등 - 건강장애: 의사진단서, 출결확인서(학교생활기록부) - 졸업자: 졸업증명서

다. 유의사항

- 1) 교육기관에 재학하지 않은 영·유아 및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가 거주지역 특수교육지원 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센터에서는 서류 접수 후 지원 현황을 해당 학교 안내

1)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신규 신청은 별도 계획에 의거하여 실시함

- 2) 거주지 주소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업무포털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담당교사가 확인하고, 진단·평가 의뢰서[서식2] 주소 확인자 란에 서명(최근 1개월 이내 서류)
※ 센터 방문 신청의 경우 접수 담당자가 제출 서류를 통해 확인 후 서명
- 3) 진단·평가 의뢰서에 복지카드 상 장애명을 작성한 경우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
- 4) 보호자가 해당자 제출서류 이외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모두 제출 가능
- 5) 기타(해당자만 제출) 사항
 - 가) 장애인 증명서는 관할 주민 자치센터 방문 발급 또는 정부24를 통해 인터넷 발급 가능
 - 나) 병·의원 기록은 1년 이내 발부받은 의사진단서, 최근 6개월 이내 의무기록 사본,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등으로 하되, 해당 기간은 교육지원청에서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다) 졸업자는 최종 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졸업증명서 등을 제출
- 6) 배치 희망학교 및 배치유형 작성 시
 - 가) 특수학급을 희망하는 경우, 거주지에서 가까운 특수학급 설치교의 현황을 고려하여 1~3희망까지 작성하여 신청
 - 나) 동일교 일반학급을 희망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정도에 따른 통합교육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청(※ 단, 타 학교로 배치를 희망하는 경우 거주지에서 가까운 학교로 배치 신청)
 - 다) 특수학교 배치를 희망하는 경우, 특수교육지원센터와 특수학교에 정원, 거리, 통학차량 이용 등을 사전에 문의하고 신청
- 7) 중도중복장애 유형 선정 시 교육부 자료(「중도중복장애 등을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안내 자료」 2022. 7.) 참조
- 8)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방안에 따름

2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가.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1조(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등)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2조(배치에 대한 이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나. 유형별 절차 및 제출서류

1) 동일교 내 재배치(예: A중학교 일반학급 ↔ A중학교 특수학급)

가) 절차 및 제출서류

절차	제출서류
① 보호자가 학교장에게 재배치 신청 ② 학교장은 개별화교육지원팀 소집 및 검토 ③ 학교장이 교육장(감)에게 재배치 신청 ④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⑤ 심의 결과 통보	■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신청서 [서식3] ■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록 사본(학교자체양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식10]

나) 유의사항

- (1) 배치유형 변경은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사항으로 학교 자체 변경 불가
- (2) 배치유형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적합성 및 타당성을 근거를 들어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함
- (3) 순회학급을 희망하는 경우, 순회교육 적합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청해야 함

2) 전학으로 인한 재배치(예: A중학교 특수학급 ↔ B중학교 특수학급)

가) 절차 및 제출서류

절차		제출서류
중 학 교 이 하	관 내	① 전출교에서 교육장에게 재배치 신청 ②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③ 심의 결과 통지
	관 외	① 전출교에서 소속 교육지원청에 재배치 신청 ② 소속 교육지원청은 전입 희망 교육지원청으로 재배치 의뢰 ③ 전입 희망 지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④ 심의 결과 통보
고 등 학 교	관 내	① 전출교에서 교육감에게 재배치 신청 (※ 수신처: 소속 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 ②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③ 심의 결과 통지
	관 외	① 전출교에서 경기도교육청에 재배치 신청 (※ 수신처: 소속 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 ② 경기도교육청은 전입 희망 교육청으로 재배치 의뢰 ③ 전입 희망 지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④ 심의 결과 통보

-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신청서 [서식3]
- 주소 확인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식10]
- 기타(해당자만 제출)

[관외-타시군 희망 시]

: 배치결과통지서 또는 진단·평가결과통지서 사본 제출(부재한 경우 관련 공문 사본 제출)

[관외-타시도 희망 시]

: 전입 희망 교육지원청(센터) 또는 교육청에 사전 문의 후 필요한 서류 추가 안내

[배치유형 변경 시]

: 소속 학교 특수(통합)교사 의견서

나) 유의사항

- (1) 타시·군은 경기도 지역 내, 타시·도는 경기도 지역 이외의 시·도
(예시 - 타 시·군: 경기도 수원 ↔ 이천 / 타 시·도: 경기도 ↔ 서울특별시)
- (2) 부득이한 사유(비밀전학 등)가 발생한 경우, 특수교육대상자 선 배치 공문을 먼저 시행하고, 추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결과 통지(충분한 타당성 검토 후 시행)
- (3) 배치결과 통지서 또는 진단·평가 결과통지서 분실 시 배치 관련 공문으로 대체 가능
- (4) 타 시·도 재배치의 경우, 해당 시도 교육(지원)청과 사전 협의하여 제출서류 확인 및 안내
- (5) 특수교육대상자가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전학한 경우라도 전출교는 보호자 안내 및 협조를 통해 재배치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6) 제출서류 이외에 교사보호자 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기타 의견을 보충할 수 있음
- (7) 주소 확인 서류 검토 시 모든 서류에서 해당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및 기타 개인 민감정보 삭제 후 제출(주소 확인 서류 예: 주민등록등본, 부동산 관련 계약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업무포탈 등)

3) 학교폭력 가해 특수교육대상자 전학으로 인한 재배치

가) 절차 및 제출서류

절차	제출서류
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학 조치 시 학교장이 교육장(감)에게 전학 배정 요청	■ 가해학생 전학 학교 배정 요청서 [서식15]
②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 보고서 [서식16]
③ 심의 결과 통보	■ 담당(특수, 통합)교사 의견서[서식9]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식10]

나) 유의사항

- (1) 특수교육대상자의 전학 학교 배정 요청 시 특수(통합)교사는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내용은 학부모 상담 사항 및 학생의 장애 유형, 정도,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함
- (2)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특수(통합)교사의 의견서 및 배치 후 기존 배치유형, 재배치교육 현황, 통학 가능성, 지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치 결정
※ 고등학교의 경우 「경기도 고등학교 재입학·전학 및 편입학 업무 시행 지침」에 따라 일반학생은 관할 교육지원청 이외에 배정하나 특수교육대상자는 위 유의사항을 고려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내에도 배치할 수 있음.
※ 초등학교, 중학교의 경우 「경기도 교육지원청의 재입학·전학 및 편입학 업무 시행 지침」에 따라 일반학생은 소속 학군(구) 이외에 배정하나 특수교육대상자는 위 유의사항을 고려하여 소속 학군(구) 내에도 배치할 수 있음.
- (3) 해당 절차의 기타 세부 사항은 교육(지원)청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3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취소

가. 선정·배치 취소 사유

-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의 특수교육지원 종료 요구가 있을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요건이 소멸된 경우: 건강장애, 발달지체 등

나. 절차 및 제출서류

절차	제출서류
① 보호자가 학교장에게 선정·배치 취소 신청 ② 학교는 보호자에게 특수교육지원 중단 안내 ③ 학교는 교육장(감)에게 취소 관련 서류 제출 ④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보고 ⑤ 결과 통보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취소 신청서[서식4] (건강장애 학생의 경우 원격수업 퇴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식10] ■ 담당(특수, 통합)교사 의견서[서식9]

다. 유의사항

- 1) 학교에서는 보호자에게 선정·배치 취소 시 종료되는 특수교육지원 내용을 충분히 안내하고 보호자가 해당 내용을 숙지하였는지 반드시 확인
- 2) 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 **취소 기준일**은 보호자의 **취소 신청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처리**하되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결과를 확인 후 **행정 처리 완료(Q&A 4번)**
- 3) **건강장애** 학생은 특수교육대상자 자격 요건의 소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격수업 퇴교 신청서만 제출
- 4) **발달지체** 학생 중 만 9세를 초과하는 특수교육대상자가 **해당 연도** 장애 유형 변경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 요건 소멸로 인해 선정·배치 취소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5)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가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소속 지역 일반학교에 재배치 후 일반학교에서 취소 신청을 해야 함(Q&A 5번)

4 특수교육대상자 유예(취학유예)

가.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9조(보호자의 의무 등)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4조(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 등)
- 초·중등교육법 제14조(취학 의무의 면제 등)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취학 의무의 면제·유예)

나. 정의

- 1) 취학유예: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발육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취학 의무를 일정 기간 미룸
- 2) 유예: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발육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교육 이행이 어려운 경우 교육을 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하는 것으로 학칙에 의해 정원으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음

다. 절차 및 제출서류

절차	제출서류
① 보호자가 학교장에게 유예(취학유예) 신청 ② 학교는 적절성 검토하여 교육장(감)에게 서류 제출 ③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④ 심의 결과 통보	■ 특수교육대상자 유예(취학유예) 승인 신청서 [서식5]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식10] ■ 증빙 서류 - 질병: 진단서 등 ■ 기타 서류 [유예] ■ 담당(특수, 통합)교사 의견서 [서식9]

라. 유의사항

- 1)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등·하교 가능성, 순회교육 실시 가능성 및 보호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심사함
※ 건강장애 학생은 유예 신청 대상이 아니며, 신청 시 취소 절차로 처리함.
- 2) 유예기간은 1년 이내, 유예기간 연장의 경우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 3) 유예 요건
 - ‘경기도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기간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 미인가 대안학교로 이동(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0조)
 - 임신, 출산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4) 특수교육대상자가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 1/3이상 미인정 결석한 경우 유예 대상자가 아니며 학교에서 정원 외 관리대상으로 처리함.
- 기타 장기 결석으로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 1/3이상 결석을 한 경우
 - 해당 학생에 대한 현황은 교육(지원)청에 공문서(예시-[서식17])를 통해 보고해야 함

마. 참고사항

1) 유예 사유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발육 상태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유예나 면제 사유가 되는 경기도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 장기간 취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보호자가 신청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서 정하는 감염병(진단서 첨부 : 취학이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이 담긴 진단서)
- 취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보호자가 신청한 신체적·정신적 결함 또는 질병(진단서 첨부: 취학이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이 담긴 진단서)
- 장기간 학습적응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성장부진 또는 발육부진(진단서 첨부: 취학이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이 담긴 진단서)

※ 초등학교, 중학교 학적 길라잡이

2) 입학연기 및 관련 용어

구 분	입학연기	취학유예·취학면제	유예·면제
신청 기간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10.1.~12.31.	만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1.1.~ 해당학교의 입학기일 전	입학 이후
신청 기관	읍·면·동장	특수교육운영위원회	특수교육운영위원회
학적 생성	×	×	○

3) 기타 참고사항

- 미인정 유학으로 인한 출국학생의 경우, 「의무교육대상자 학적처리 지침」에 따라, 관련 신청서류(취학유예 승인 신청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부모 동반 이민, 파견, 체류 등 확인 서류) 학교에 제출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을 확인할 수 있음

5 특수교육대상자 면제

가.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9조(보호자의 의무 등)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4조(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 등)
- 초·중등교육법 제14조(취학 의무의 면제 등)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취학 의무의 면제·유예)

나. 정의

- 면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취학 및 교육 의무를 면함

다. 면제 사유

- 사망(명예졸업에 해당하는 사유 외), 유학(미인정 유학 제외), 정당한 해외 출국 등의 사유로 인해 국내에서 취학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라. 절차 및 제출서류

절차	제출서류
① 보호자가 학교장에게 면제 신청서 제출 ② 학교장이 교육장(감)에게 관련 서류 제출 ③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④ 심의 결과 통보	■ 특수교육대상자 면제 승인 신청서 [서식5]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식10] ■ 증빙 서류(해당자) - 질병: 진단서 등 - 유학·정당한 해외출국: 해외파견 관련 공문, 출입국사실 증명서 등 - 사망: 사망확인서류는 학교 보관

마. 유의사항

- 1)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등·하교 가능성, 순회교육 실시 가능성 및 보호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심사함
- 2) 사망으로 인한 면제의 경우, 학교에서 사망확인서류 확인 후 면제공문 제출
 - 사망으로 인한 면제 시 ‘특수교육대상자 면제 승인 신청서, 사망확인서’ 미제출
 - 공문에 학생 인적사항, 장애유형, 배치 유형 기재
 - 건강장애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원격수업기관 퇴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

- 3) 면제를 신청하였지만, 특별한 사유를 들어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소속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현장 실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4) 면제가 승인된 경우, 해당 면제승인 통지서가 학부모에게 전달되어 보관될 수 있도록 학교에 안내

6 특수교육대상자 재취학

가.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9조(보호자의 의무 등)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4조(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 등)

나. 재취학 대상

- 1) 유예·면제 등으로 학업 중단했던 특수교육대상자가 학업 중단 당시 학년으로 재취학하고자 하는 경우
- 2) 유예·면제 등으로 학업 중단했던 특수교육대상자가 학력 인정을 받아 차상급 학년 또는 상급학교로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

다. 절차 및 제출서류

절차	제출서류
① 보호자가 학교장에게 재취학 신청서 제출 ② 학교장이 교육장(감)에게 관련 서류 제출 ③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④ 심의 결과 통보	■ 특수교육대상자 재취학 신청서 [서식6] ■ 유예 및 면제승인 통지서 또는 관련 공문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식10]

라. 유의사항

- 1) 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로 다른 학교로 재취학을 희망하는 경우,
 - 가) 동일 시·군 내 다른 학교: 기존 소속교로 재취학 후 재배치 신청 절차 진행
 - 나) 타시·군의 다른 학교: 해당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직접 신청서 제출
 - ※ 지원센터는 서류 접수 후 해당 신청 현황을 소속교 및 희망교에 유선으로 안내
 - 다) 타 시·도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문의하여 진행

- 2) 일반학교 학적이 없는 장애학생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배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일반학교 취학(전·편입)을 통해 학적을 생성하고, 신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절차를 진행 (단, 학교와 협의하여 일반학교 재취학과 신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동시 진행 가능)
- 3) 재취학 시 차상급 학년 또는 상급학교로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 보호자는 학년 결정을 위한 증빙서류를 **원적교 또는 희망하는 학구(군)배정교에 제출해야 함**
(학년 결정은 학교에서 실시하며, 관련 세부절차 및 방법은 Q&A 참조)
- 4)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유예자 재취학 관련 안내

① 유예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전에 재취학 대상자 현황을 해당 학교로 통보



② 학교는 [서식 기]을 활용하여 보호자에게 재취학 안내문을 통지



③ 특수교육대상자가 재취학하는 경우 학교는 해당 지원청으로 재취학 현황을 보고

- 5) 학교의 정원외 관리 대상 재취학 관련 안내
 - 정원 외 학적 관리 학생의 경우, ‘의무교육단계 아동·학생에 대한 취학 이행 및 독려 세부 시행기준’에 따라 학년도 시작 2개월 이전부터 1개월 이전까지(1월 중) 재취학할 수 있도록 보호자에게 안내

마. 참고사항

- 1) 필요시 면제나 유예된 자의 재취학 학년은 학칙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학교장이 정함
- 2) 귀국 학생의 경우 아래의 서류를 보호자가 학교에 제출

-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반드시 입퇴학 연월일 및 재학 학년 명시, 학교장 서명 또는 직인)
※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에는 영사관(대사관)의 공증 필요
- 국내 최종학교 재학 또는 졸업증명서
(재학 학년 명시, 예: ~부터 ~까지 ~학년에 재학하였음을 증명함)
- 출입국사실증명서 (부, 모, 학생 각 1통, 학생의 경우 입국일자가 기록되어야 함.)
-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
- 기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른 서류

7 특수교육대상자 장애 유형 변경

가.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6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나. 장애 유형 변경 사유

- 해당 연도 만 9세 발달지체 학생의 장애 유형 변경
- 기존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건강장애 유형의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기존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제공되는 해당 장애 유형의 교육적 지원이 부적합한 경우

다. 절차 및 제출서류

절차	제출서류
① 보호자가 학교장에게 장애 유형 변경 신청 ② 학교장이 교육장(감)에게 관련 서류 제출 ③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 실시 ④ 진단·평가결과를 교육장(감)에게 보고 ⑤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⑥ 심의 결과 통보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서식1] ※ 의뢰 사유에 [장애유형 변경] 명시 ■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식10] ■ 기타 증빙 자료 (복지카드, 진단서, 관련 전문가 소견 등)

라. 유의사항

- 1) **발달지체** 학생은 만 9세가 되는 해당 연도 내 반드시 장애 유형 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특수교육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을 안내
- 2) 특수교육대상자의 유형 변경이 기각되더라도 기존 특수교육대상자의 자격을 유지하며, 발달지체 학생은 장애 유형별 요건에 부적합한 경우 해당 학년도까지 유지 후 종료(Q&A 6번)
- 3)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 시 학생에게 적합한 장애 유형에 대한 의견 및 사유를 학교에서 반드시 기재
- 4) 건강장애 유형으로 변경 시 반드시 건강장애 선정 요건 적합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청하고, 배치유형을 일반학급 배치로 작성(특수학교 제외)
- 5) 중도중복장애 유형으로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두 가지 장애유형을 명시
예) 중도중복장애(지적장애, 시각장애)

8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신청 및 철회 신청

가.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등)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순회교육 등)
- 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
- 교육부 및 경기도교육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나. 목적

- 만성질환 치료로 인해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건강장애학생의 학업 연속성 및 학습권 보장
- 개별화된 학습지원, 심리·정서적 지원 등을 통해 학교생활적응 도모 및 성공적인 학교 복귀 지원

다. 건강장애학생 선정 절차 및 제출서류

절차	제출서류
① 보호자가 학교장에게 신청서 제출 ② 학교장이 교육장(감)에게 신청 - 초·중: 교육지원청 - 고: 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과) ③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 실시 ④ 진단·평가결과를 교육장(감)에게 보고 ⑤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⑥ 심의 결과 통보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서식1] ■ 특수교육대상자 기초조사 카드 [서식2]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식10] ■ 건강장애 관련 서류 - 학교생활기록부사본(출결확인용), 의사진단서, 입원확인서, 원격수업 입교 신청서 등 ※ '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계획' 참조

라. 유의사항

(건강장애 요건) ①만성질환으로 인하여 ②연간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지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③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 병명에 따른 선정이 아니라 위의 3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개별학생의 의료적 진단 및 교육적 진단을 고려하여 선정
- 만성질환으로 관리가 필요하나 학교에 정상적으로 출석이 가능하고, 특수교육 지원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는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님(ADHD, 우울증, 조현병 등 정신질환은 해당되지 않음)
- 선정 후 상급학교 진학 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재선정

마. 기타

그 외 세부방침은 「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계획」 참조

9 심사청구

가.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6조(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심사청구)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2조(배치에 대한 이의)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3조(심사청구 절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8조(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심사청구 결과 통보 등)

나. 심사청구 사유

- 본인 또는 보호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교육지원 내용·배치·차별에 대한 이의
- 각급 학교장: 배치에 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특수교육대상자의 3개월 이상 상당한 학교 생활 부적응

다. 절차 및 제출서류

절차	제출서류
① 보호자가 학교장에게 심사청구 서류 제출 ② 학교장은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서류 제출 ③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 ④ 심사 결과 통보	■ 심사청구서 [서식8]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식10] ■ 입증자료 - 전문가 진단서 및 소견서 - 관련 증빙 자료 등

라. 유의사항

- 1)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심사청구 제출 시,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입증 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해당 자료는 분야별 전문가 진단서 및 소견서 또는 본건과 관련된 증빙 자료 등을 말함
- 2) 각급 학교의 장은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가 3개월 이상 학교생활에의 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실시 한 학생에 대한 교육적 지원 내용 및 현황, 결과 등의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3) 배치에 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란 해당 학교가 교육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종류와 배치를 요구받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종류가 달라 효율적인 교육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함(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일반 학교의 장은 해당 사유로 신청 불가)

10 장애 영유아 진단·평가

가.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9조(보호자의 의무 등)

나. 사유

- 장애 유아 조기발견 및 교육 지원체계 마련
- 장애아 보육료 신청을 위한 증빙 서류가 필요한 유아(만3세~만8세) 지원
-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 입소를 위한 증빙 서류가 필요한 유아(만3세~만5세) 지원

다. 절차 및 제출서류

절차	제출서류
① 보호자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평가 신청 ②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 실시 ③ 진단·평가결과를 교육장(감)에게 보고 ④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⑤ 심의 결과 통보 ⑥ 보호자에게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발급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서식1] ■ 특수교육대상자 기초조사 카드 [서식2]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식10] ■ 기타(해당자만 제출): - 유아 발달검사 결과 및 의사 소견서 등

라. 유의사항

- 1) 진단검사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게 기타 서류를 추가 제출 요청
- 2) 의료기관의 검사 결과 및 의사 소견서 등 관련 서류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인정
- 3) 유아의 장애 정도 및 상태 등 단순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신청 불가
- 4) 세부 검사 방안 등은 교육지원청에서 별도의 추가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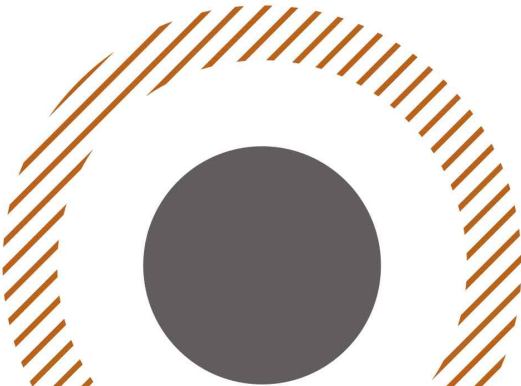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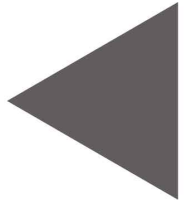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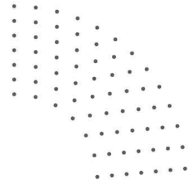
마. 기타

- 1) 장애아 보육료 지원 근거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장애아 보육료 내용 참조
- 2)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 입소의 경우 지역별, 어린이집 상황 등에 따라 입학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보호자가 해당 어린이집에 관련 서류 및 절차 등을 사전 확인하도록 안내

IV

특수 교육 대상자 진단 · 평가 및 선정 · 배치 매뉴얼

특수교육운영위원회



IV. 특수교육운영위원회

CONTENTS

1. 개요
2.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기능과 법적 성격
3.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
4.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위원
5.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권한과 의무
6. 특수교육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7.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IV

특수교육운영위원회

1 개요

가.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0조(특수교육운영위원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6조(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경기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규칙(경기도교육규칙 제741호)

나. 정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여야 하는 특수교육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과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심사청구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기구
-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와 재심을 담당하도록 만들어진 기관
-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을 기본 사명으로 하고, 위원회의 공정성과 권위가 장애인의 교육권과 직결되는 기구

2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기능과 법적 성격

가. 기능

-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
 - 2)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 3)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에 관한 사항
 - 4)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 5)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 유예 및 면제에 관한 사항
 - 6) 특수교육대상자의 재취학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지도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방안의 강구
-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방안의 강구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방안의 강구 등

나. 법적 성격

- 1) 법정 위원회: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는 법정 기구이므로 임의로 폐지하거나 교육장(감)의 재량으로 운영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 2) 자문·심의·의결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특수교육 업무수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심의의 결하는 기구이다. 특히 심사청구 결정은 교육장(감), 각급 학교장을 기속하는 의결기구 역할을 한다.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사안별 기구 성격 |

사안	법령	성격
특수교육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	특수교육법 제5조	자문·심의기구
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	특수교육법 제7조	심의기구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특수교육법 제15조	심의기구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에 관한 사항	특수교육법 제17조	심의기구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특수교육법 제36조	의결기구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유예 및 면제에 관한 사항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4조	심의기구
특수교육대상자의 재취학에 관한 사항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4조	심의기구
교육장(감)이 회의에 부치는 특수교육 발전에 관한 사항	경기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규칙 제3조	자문·심의기구

의결기구·심의기구·자문기구

- ▶ 의결기구 : 어떤 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제 기구. 의결기구는 단체의 의견을 내부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단체는 의결기구의 결정에 기속되므로** 결정 사항에 따라야함(각종 징계위원회, 지방의회 등)
- ▶ 심의기구 : 어떤 단체 운영에 필요한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고, 운영에 관계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조정·통합 및 견제하기 위해 사전적 논의 절차를 행하는 합의제 기구. 해당 **단체는 심의기구 결정에 기속되지 않으므로 결정 사항을 반드시 따라야 하지는 않음**
- ▶ 자문기구 : 어떤 단체 요청에 의하여 혹은 자발적으로 의사 결정에 참고가 될 의견을 제공하는 기구. 자문기구가 제공하는 답신·의견·건의는 법률상 해당 **단체를 기속하는 힘이 없음**

3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

가. 유형

- 1) 교육부장관 소속의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 2) 경기도교육감 소속(제1부교육감 관할)의 ‘경기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도위원회)’
- 3) 교육장 소속의 ‘지역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

나. 조직과 역할

1) 위원장

- 도위원회는 교육과정국장이, 지역위원회는 교육국장(국 미설치 교육지원청은 교육과장)이 위원장이 된다.
- 위원장은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대표로서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사정리 및 질서유지 권한을 갖는다.

2) 부위원장

- 도위원회는 특수교육과장이, 지역위원회는 초등교육지원과장(국 미설치 교육지원청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이 부위원장이 된다.
-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

-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된다.
- 위원은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의사 결정에 참여한다.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에 포함된다.

4) 소위원회²⁾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설치·운영한다.
- 전학·유예·재취학 등 심의안건이 단순·명백하고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소위원회 또는 서면 심사(심의) 절차를 거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의 소위원회에서 심사(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위원회 심사(심의)는 위원회의 심사(심의)로 본다.
 -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심사에 관한 사항

2) 경기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제11조(소위원회) 참고, 제1조에 따라 교육지원청 교육장 소속으로 두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도 적용할 수 있음

-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학교 배치 심사에 관한 사항
-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 등에 관한 사항

경기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소위원회 위임사항

소위원회는 운영위원 중 외부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은 경기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위원장의 결재 후 효력 발생 함(2015년 제2차 경기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2015.4.20.) 심의, 특수교육과-3432, 2015.4.23.)

5) 간사

- 간사는 위원회별로 1명만 두며,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교육장(감)이 지명한다.
- 간사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소집, 개최, 심의, 회의기록 등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4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위원

가. 자격과 선출

1) 자격

- **당연직위원**은 ‘교육장(감) 소속 공무원 중 교육감이 임명하는 자’이다. 이때 ‘교육장(감) 소속 공무원’의 범위는 **본청인 교육청(지역위원회는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에 한하며, 학교 등 하급 기관 소속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당연직위원의 자격범위 설정은 위원의 구성 비율 및 임기와 관련이 있다.
- 위촉위원은 해당 자격이 있는 자 중에 교육장(감)이 위촉한다.

구분	도위원회	지역위원회	
		국 설치 교육지원청	국 미설치 교육지원청
당연직 위원	위원장	교육국장	교육과장
	부위원장	초등교육지원과장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 (당연직 위원이 아닐 수 있음)
	위원	교육장(감) 소속 공무원 중 교육장(감)이 임명하는 자	
위촉위원		1.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 설치교 관리자 2. 특수교육 교원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거나 교육하였던 사람 3.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로서 특수교육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의 학교에서 특수교육에 대한 학문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6. 의사, 변호사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 지능측정, 성격진단, 적성검사 등 심리진단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2) 위촉 방법과 절차

- 도위원회의 위원은 아래의 방법과 절차를 통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경기도교육청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제9조)

도위원회 위원의 위촉 방법 및 절차

- ▶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자, 경기도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도의회 의원, 관계기관 및 소속 공무원 이외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때는 미리 인원수, 자격, 선정기준 등을 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공개모집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거나, 응모자 중 자격기준에 합당한 자가 없는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 위원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긴급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위원회가 해당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 위촉된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도위원회를 준용하여 위촉한다.

나. 위원의 정수 및 구성 비율

	도위원회	지역위원회
위원의 정수	위원장 포함 13명 이내	위원장 포함 9명 이내
구성 비율	위촉위원의 반수 이상	위촉위원의 반수 이상

다. 임기

1) 임기 기간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도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지역위원회의 위원장(국 설치 교육지원청은 부위원장 포함)의 임기는 현 소속과 직위에 따른다.

2) 위원의 연임

- 위촉위원은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한차례만 연임’은 중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라 ‘연속적인 재임(在任)’은 2기에 한해 허용됨’을 나타내는 규정이다.

예시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7기	8기	비고
A			x	x	x		x	x	가능
B			x		x	x			가능
C				x	x	x	x	x	불가

3) 사임

- 위원은 사임할 수 있다. 사임의 사유나 요건, 절차 등에 제한은 없다.
- 당연직위원 중 도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지역위원회의 위원장(국 설치 교육지원청은 부위원장 포함)은 사임할 수 없다.

4) 위원의 해촉 사유와 방법

- 위원회의 위원은 『경기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규칙』제8조와 『경기도교육청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임중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위촉 해제되지 아니한다.
- 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해촉 사유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치는 해촉 사유
 -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직무의무를 위반하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5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권한과 의무

가. 권한

1) 자문·심의·의결

- 위원은 특수교육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특수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심의·의결할 권한이 있다.
- 위원은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 심사, 표결한다.

2) 특수교육 운영 참여

- 위원은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특수교육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 위원은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제안하고 건의할 수 있다.
- 위원은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특수교육 운영에 관여하지 못한다.

3) 자료 제출 요구

- 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시 또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
- 도위원회의 위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려면 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개인 자격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려면 정보공개청구절차 등에 의하여야 한다.

나. 의무

1) 회의 참여의 의무

- 위원은 특수교육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 위원의 대리 참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

2) 지위남용 등 금지 의무

-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3)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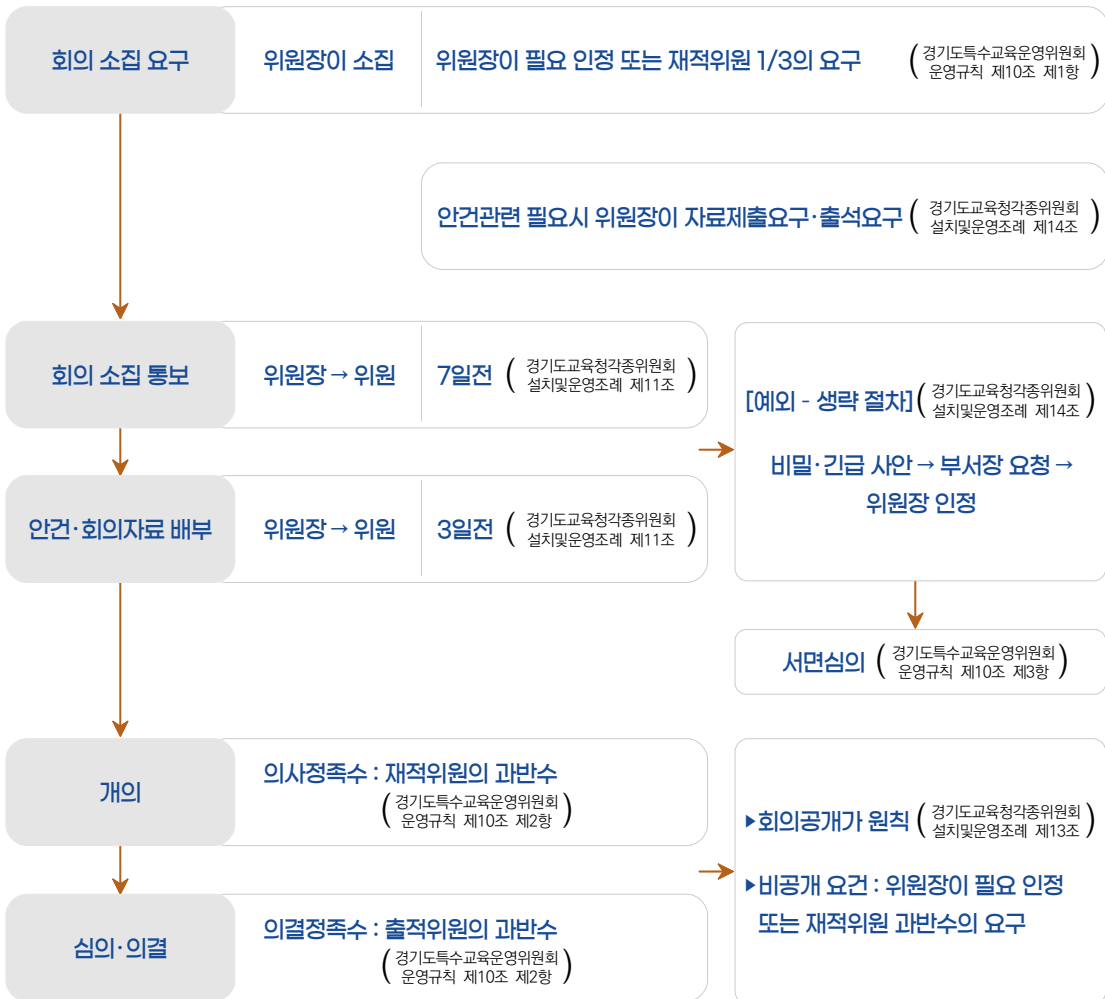
- 위원은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따라야 한다.

6 특수교육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가. 도위원회의 회의 운영 절차는 아래와 같다.

나. 지역위원회는 도위원회 회의 운영 절차에 준하여 운영한다.

| 경기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회의 절차 |



7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 12. 30.] [경기도조례 제7495호, 2022. 12. 30., 일부개정]

경기도(자치행정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소속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01.13.]

가.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전문개정 2020.01.13.]

나. 조례·규칙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전문개정 2020.01.13.]

다. 각종 훈령이나 지침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전문개정 2020.01.13.]

라. 그 밖에 도가 필요에 의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전문개정 2020.01.13.]

2. “위촉직 위원”이라 함은 법령, 조례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라 함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라 함은 도 소속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01.13.]

제4조(설치요건)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 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기존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이 있을 것
4. 업무가 연속성·상시성이 있을 것

제5조(설치절차) ① 담당부서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 에는 위원회 설치계획과 조례안을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

②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회 구성 및 임기
3.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4.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5.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개정 2013.12.2.>

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구성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여부, 위원회 존속기한 등을 검토하여 협의한다.<개정 2013.12.2.>

④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현황을 3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위원회 구성 일시 및 기능
2. 위원회 회의개최 등 운영계획
3. 위원 명단 및 연간 예산

제6조(존속기한) ① 담당부서의 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한시위원회로 운영하거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 존속기한을 정하여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 다른 조례를 제·개정 할 경우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존속기한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존속기한 내에 있는 위원회라 하더라도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위원회의 존속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회는 위촉직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있는 부서의 장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1.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개정 2013.12.2.>
2.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회 의원<개정 2017.12.29.>
3. 그 밖에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개정 2013.12.2.>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3.12.2.>

③ 담당부서의 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 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3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3.12.2.>

1.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
2.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 ④ 도지사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미리 인원수, 자격, 선정기준 등을 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공모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거나 응모자 중 자격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없는 경우<개정 2013.12.2.>
 2.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 위원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긴급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위원회가 해당안건을 처리 한 후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⑤ 도지사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를 직접 운영하는 실·과는 여성가족 업무담당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13.]

제7조의2(위원의 위촉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금품·향응수수·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본조신설 2020.08.07.]

제8조(청렴서약서 제출) 심사위원은 별표 1에 따르고, 관계공무원은 별표 2에 따라 청렴서약서(형사 처벌 여부를 포함)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8.7.>

제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개정 2020.12.31.>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4.11.]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개정 2013.12.2.>) ①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3.12.2.>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개정 2013.12.2.>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개정 2013.12.2.>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청렴서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신설 2020.8.7.]<개정 2022.12.30.>
 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개정 2013.12.2.>
- ② 도지사는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위촉 해제 사유와 제8조의 내용을 위촉 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

제10조(회의의 고지) 위원회의 장은 해당위원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통보는 7일 전까지, 안건과 회의 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공개이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담당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12.2.>

제11조(대리참석) 위원회 위원의 대리 참석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3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회의 장은 위원회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시 또는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자료의 공개) 위원회 자료 공개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0.08.07.]

제15조(운영 점검 및 평가 등 <개정 2020.08.07.>)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자문, 심의·의결 등 결정사항 주요 내역
3.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
4. 위원회의 구성·운영의 변경사항 등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점검 및 평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0.08.07.>

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정비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의 장은 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 위원회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

제16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12.31.>

부칙 〈2012.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부칙 (경기도 조례 중 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4651호, 2013.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구성·운영 중인 위원회의 경우 임기만료·위촉해제 등으로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는 때부터 제7조제5항을 적용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제5778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6441호, 2020.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일괄정비조례) 〈제6828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495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별지 제1호서식]

(위원용)

청렴서약서(제9조 관련)

소 속 :

직 위 :

성 명 :

위 본인은 경기도교육청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위 서약자

(서명 또는 날인)

경기도교육감 귀하

■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별지 제2호서식]

(공무원용)

청렴서약서(제9조 관련)

소 속 :

직 위 :

성 명 :

위 본인은 경기도교육청 위원회의 심의 업무자로 위촉(임명)되어
심사를 함에 있어서,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집행함은 물론
평가와 관련하여 지득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만일 이를
위반하여 물의를 야기할 때에는 전적인 책임을 지고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할 것을 서약
합니다.

년 월 일

위 서약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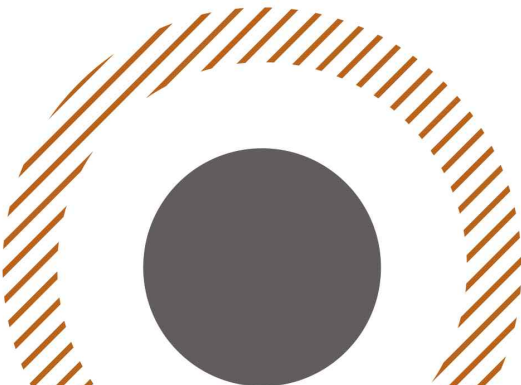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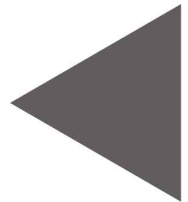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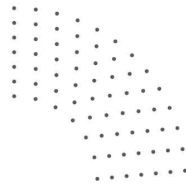
(서명 또는 날인)

경기도교육감 귀하



특수 교육 대상자 진단 · 평가 및 선정 · 배치 매뉴얼

참고자료



V. 참고자료

CONTENTS

1. 경기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2. 학적처리에 사용하는 용어
3.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특수교육법 시행령 별표)
4.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

V

참고자료

1 경기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경기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시행 2021. 11. 4.] [경기도교육규칙 제903호, 2021. 11. 4., 타법개정]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과), 031-820-078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0조에 따라 경기도교육감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 소속으로 두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9.5.〉〈개정 2021.11.04.〉

제2조(설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경기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도위원회”라 한다)와 교육지원청 교육장 소속으로 지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개정 2018.9.5.〉

제3조(기능)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으로 두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에 관한 사항〈개정 2018.9.5.〉
4.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5.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 유예 또는 면제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특수교육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도위원회의 구성) ① 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② 도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과정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특수교육과장이 된다. 〈개정 2013.5.10., 2015.2.27. 규741, 개정 2018.9.5.〉〈개정 2019.2.20.〉

③ 도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이 반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 설치교 관리자
2. 특수교육 교원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거나 교육하였던 사람
3.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로서 특수교육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의 학교에서 특수교육에 대한 학문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6. 의사, 변호사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 지능측정, 성격진단, 적성검사 등 심리진단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제5조(지역위원회의 구성) ①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국장(국 미설치 교육지원청의 경우에는 교육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초등교육지원과장(국 미설치 지역교육청의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이 된다. <개정 2013.2.28. 규691, 개정 2018.9.5.> <개정 2021.02.15.>
 ③ 지역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장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하고, 위촉위원은 제4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9.5.>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11.04.>

제8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임 중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위촉 해제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21.11.04.>
 4. 그 밖에 직무의무를 위반하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면직 또는 위촉 해제되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면직 또는 위촉 해제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소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11.04.〉

- ③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심의안건이 단순하고 명백하여 회의를 소집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소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 ② 간사는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지명한다.

-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세칙) 이 규칙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903호,2021.11.04〉(경기도교육청 교육규칙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규칙)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학적처리에 사용하는 용어

1. 입학: 학교에 들어감(1학년 신입학)
 2. 취학: 처음으로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의 적정 학년에 들어감
 3. 재학: 당해 학교의 학생 신분(학적)을 보유함
 4. 재입학: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 또는 그 아래의 학년으로 다시 입학함(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5. 재취학: 의무교육 대상자로서 “면제, 유예, 정원외학적관리”중인 자(의무교육을 중단한 자)가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에 다니게 됨
 6. 편입학: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로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거나,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함(의무교육 대상이 아닌자가 학업중단 이전과 동일 또는 하위의 초·중학교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는 경우에도 편입학으로 처리)
 7. 전입학: 다른 학교 재학생이 우리 학교 재학생이 됨
 8. 복학: 휴학기간 만료에 따라 다시 학교에 들어옴(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9. 진급: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여 상급 학년으로 올라감
 10. 조기진급: 학칙에 의거 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을 조기 이수하여 차상급 학년으로 진급함
 11. 전출: 다른 학교로 전입학하기 위해 해당 학교의 학적을 옮김.
 12. 유급: 해당 학년 교육과정 미수료에 의해 상급 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함
 13. 휴학: 질병 등 사유에 의해 학교장의 허가 하에 일정기간 동안 교육과정 이수를 중단함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14. 면제: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의거 취학 및 교육 의무를 면함
 15. 취학유예: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학년도에 취학하여 교육 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함
 16. 유예: 재학 중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함(학칙에 의거 ‘정원외학적관리’할 수 있음)
 17. 제적: 고등학교에서 사망(명예졸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등 학칙에 따라 재학생 자격이 소멸되어 학적에서 제외됨(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18. 자퇴: 고등학교에서 개인 또는 가정사정으로 학생의 바람에 의하여 재학생의 신분을 포기 함(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19. 퇴학: 고등학교에서 징계 등 학칙에 의해 학적(재학생의 신분)을 박탈함(의무교육에 해당 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20. 수료: 해당 학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함
 21. 졸업: 전 학년 교육과정을 수료하여 해당 학교의 학업을 마침
 22. 조기졸업: 학칙에 의한 수업 연한의 단축을 통해 해당 학교 전 교육과정을 조기에 수료하여 해당학교의 전 과정을 마침
 23. 명예졸업: 학교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나 학교교육활동 이외의 사회 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경우로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명예졸업으로 인정한 경우를 말함
- ※ 유학: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비 또는 자비 유학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의 학교로 진학함 (면제 및 자퇴의 한 사유임)

3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특수교육법 시행령 별표)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22. 6. 28.>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1.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학습 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2.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

3. 지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지적 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4. 지체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기능·형태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통을 지탱하거나 팔다리의 움직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신체적 조건이나 상태로 인해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5. 정서·행동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장기간에 걸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지적·감각적·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상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
 나. 또래나 교사와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라. 전반적인 불행감이나 우울증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마. 학교나 개인 문제에 관련된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6. 자폐성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7. 의사소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언어의 수용 및 표현 능력이 인지능력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사람
나. 조음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다. 말 유창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라. 기능적 음성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8.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인하여 듣기, 말하기, 주의집중, 지각(知覺), 기억, 문제 해결 등의 학습기능이나 읽기, 쓰기, 수학 등 학업 성취 영역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

9.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지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10.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정서,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하여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

11.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지닌 사람으로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각각의 교육지원만으로 교육적 성취가 어려워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중도중복(重度重複)장애: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각각 하나 이상씩 지니면서 각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이 경우 장애의 정도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선별검사의 결과, 제9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진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1)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
- 2)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또는 정서·행동장애

나. 시청각장애: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를 모두 지니면서 시각과 청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고 의사소통 및 정보 접근에 심각한 제한이 있는 경우

4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4. 13.>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제2조 관련)

1. 지체장애인(肢體障礙人)

-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指骨 : 손가락 뼈)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다. 한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라.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마.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손가락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바.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 사. 지체(肢體)에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뇌병변장애인(腦病變障礙人)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腦卒中)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3. 시각장애인(視覺障礙人)

- 가. 나쁜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 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라.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 마.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複視)]이 있는 사람

4. 청각장애인(聽覺障礙人)

-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 라.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언어장애인(言語障礙人)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知的障礙人)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自閉性障礙人)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精神障礙人)

다음 각 목의 장애·질환에 따른 감정조절·행동·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가. 지속적인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礙,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礙) 및 재발성 우울장애
- 나.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및 기면증

9. 신장장애인(腎臟障礙人)

신장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0. 심장장애인(心臟障礙人)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1. 호흡기장애인(呼吸器障碍人)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2. 간장애인(肝障碍人)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3. 안면장애인(顔面障碍人)

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4. 장루·요루장애인(腸瘻·尿瘻障碍人)

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腸瘻) 또는 요루(尿瘻)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5. 뇌전증장애인(腦電症障碍人)

뇌전증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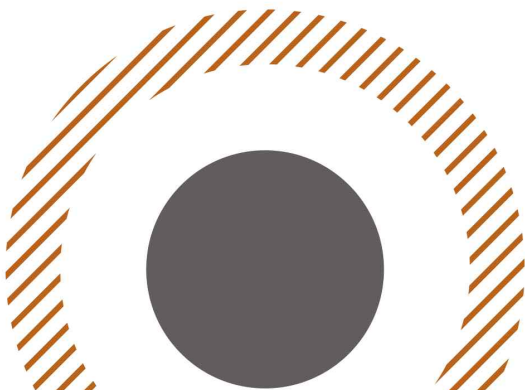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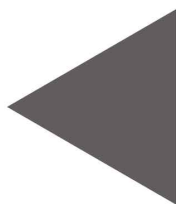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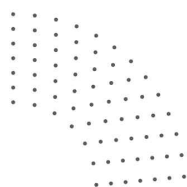


MEMO

VI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매뉴얼

서식



VI. 서식

CONTENTS

- [서식 1]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 [서식 2] 특수교육대상자 기초조사 카드
- [서식 3]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신청서
- [서식 4]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취소 신청서
- [서식 5] 특수교육대상자 (취학유예, 유예, 면제) 승인 신청서
- [서식 6] 특수교육대상자 재취학 신청서
- [서식 7] 특수교육대상자 재취학 안내문
- [서식 8] 심사청구서
- [서식 9] 보호자(담당교사) 의견서
- [서식 10]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서식 11]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보고서
- [서식 12]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통지서
- [서식 13]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결과 통지서
- [서식 14] 특수교육대상자 취학유예, 면제 승인 통지서
- [서식 15-1] 가해학생 전학 학교 배정 요청서(고등학교)
- [서식 15-2] 가해학생 전학 학교 배정 요청서(초·중학교)
- [서식 16]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 보고서
- [서식 17] 정원외 관리 대상자 현황 보고 공문(예시)

서식1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특수 교육 대상자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장애유형 (특수교육법)	의심되는 장애유형		등록장애 및 정도 (복지카드)		복지카드 등록 상 장애명 및 정도 기재			
	주 소					확인자 (담당교사)	주소지 확인 후, 담당교사 서명		
	소속기관				학년				
	배치 희망 학교	1희망			(Km)	배치유형			
		2희망			(Km)	배치유형			
3희망				(Km)	배치유형				
보호자	성 명				대상자와의 관계				
	주 소								
	연락처								
	진단·평가 의뢰 사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학부모(보호자) (인) 학교장 (인) 경기도교육감(경기도○○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개요

진단·평가

선정·배치

특수교육지원청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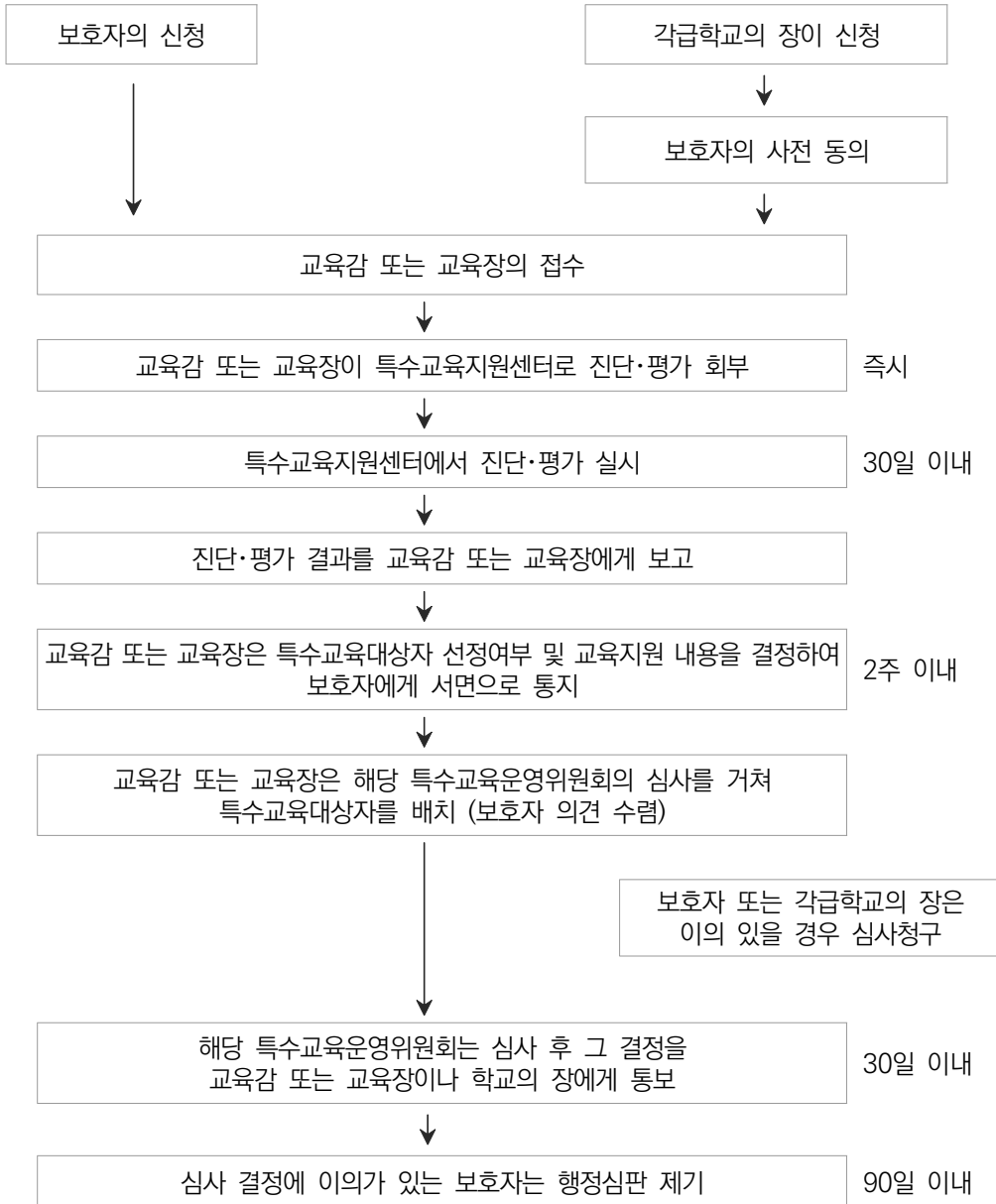
참고자료

서식

Q&A

(뒷면)

1.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의뢰서 제출 및 처리절차



2. 작성시 유의사항

- (가) 각급 학교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가 작성한 동의서를 첨부할 것.
- (나) 접수번호: 시·도(하급)교육청에서 부여하므로 지원자는 기재하지 아니함.
- (다) 의뢰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시·도교육감(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합격자에 한함)의 날인이 있어야 함.

서식 2 특수교육대상자 기초조사 카드

특수교육대상자 기초조사 카드						
특 수 교 육 대 상 자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주 소					
	소속학교		학년			
	장애유형 (특수교육법)		의심되는 장애유형		등록장애 및 정도 (복지카드)	
기 초 자 료 내 용	신체발달 및 건강상태		-신변자립 -약물복용 현황 -이동 및 신체활동 사항 등			
	정서 및 행동 특성		-정서 및 행동 특성(문제행동 등) -사회적 적응 능력(도래관계 등)			
	학습 능력	언어	-의사소통능력 -읽기 및 쓰기 능력 -해당 학년의 국어 학습능력 등			
		수리	-수개념 -기본 연산 능력 -해당 학년의 수학 학습능력 등			
기타 및 종합의견						
이 카드는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배치를 희망하는 학생의 담임교사가 작성. (단, 소속 교육기관이 없는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직접 작성) 년 월 일 담임교사(보호자): (인) 경기도교육감(○○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개요

진단·평가

선정·배치

특수교육지원청

참고자료

서식

Q&A

서식 3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신청서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신청서						
특 수 교 육 대 상 자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장애유형 (특수교육법)			등록장애 및 정도 (복지카드)		
	주 소					
	소속학교 (배치유형)			학년		
보 호 자	성 명			대상자와의 관계		
	주 소					
	연락처					
재배치 희망학교	1희망		(Km)	배치유형		
	2희망		(Km)	배치유형		
	3희망		(Km)	배치유형		
재배치 신청사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1조3항에 의거하여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특수교육대상자: (인) 학부모(보호자): (인) 경기도교육감(경기도○○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서식 4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취소 신청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취소 신청서						
특 수 교 육 대 상 자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장애유형 (특수교육법)			등록장애 및 정도 (복지카드)		
	주 소					
	소속학교 (배치유형)			학년		
보 호 자	성 명			대상자와의 관계		
	주 소					
	연락처					
배치취소 신청사유						
*첨부파일 : 담당교사 의견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1항에 의거하여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를 취소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특수교육대상자 (인) 학부모(보호자) (인) 경기도교육감(경기도○○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개요

진단·평가

선정·배치

특수교육지원청
영양지원팀

참고자료

서식

Q&A

서식 5

특수교육대상자 (취학유예, 유예, 면제) 승인 신청서

특수교육대상자 (취학유예, 유예, 면제) 승인 신청서						
특 수 교 육 대 상 자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장애유형 (특수교육법)			등록장애 및 정도 (복지카드)		
	주 소					
	소속학교 (배치유형)					
보 호 자	성 명		대상자와의 관계			
	주 소					
	연락처					
유예기간						
신청사유						
*기타 증빙서류 첨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9조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1항에 의거하여 의무교육의 유예(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특수교육대상자 (인) 학부모(보호자) (인) 경기도교육감(경기도○○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서식 6 특수교육대상자 재취학 신청서

특수교육대상자 재취학 신청서					
특수교육 대상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보호자	성명		대상자와의 관계		
	주소				
	연락처				
학업 중단 사유	학교		배치유형		학년
					기간
중단 사유					
재취학 신청 사유	(예시) 학업 중단 사유의 종료				
1희망		2희망		3희망	
희망학교		희망학교		희망학교	
학년		학년		학년	
배치유형		배치유형		배치유형	
위 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취학유예, 면제) 승인을 받은 자로 재취학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특수교육대상자: (인) 학부모(보호자): (인) 경기도교육감(경기도○○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개요

진단·평가

선정·배치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참고자료

서식

Q&A

서식 7
특수교육대상자 재취학 안내문

특수교육대상자 재취학 안내문

대상 학생 정보			
성명		생년월일	
유예기간		유예 당시 학년	
보호자			
성명		관계	
주소			

위 학생은 초·중등교육법 제13조3항 및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에 의한 의무교육대상자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학년도 ‘유예’를 승인받아 현재 ‘정원 외 관리’되고 있으며, ()학년도 ‘재취학’ 대상입니다.

따라서 재취학 안내문을 발송하오니 학년도 시작일 1개월 전까지 소속교에 방문하시어 재취학 신청을 하거나 유예 연장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교가 힘든 경우 다음 연락처로 전화 연락을 주시고, 우편으로 유예 신청서를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학교 전화: 재취학 관련 031-000-0000, 학적담당
 특수교육대상자 관련 031-000-0000, 특수교육 담당

○○○학교장

(앞면)

심사청구서

① 사건		○월 특수교육운영위원회 ○○○학생 배치 기각에 관한 건				
② 청 구 인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보호자	성명			성별	
		주소	주민등록등본 주소 기재 (전화번호:)			
		소속학교	현재 교육(보육)기관명 기재			
	학교장	성명		학교명	(전화번호:)	
③ 피청구인		경기도 ○○ 교육지원청 교육장(경기도교육청 교육감)				
④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내용		피청구인이 2022년 ○월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기각 처분된 ○○○학생의 ○○학교 ○○학급으로의 배치 관련한 심사청구 1순위: ○○교로 배치 요함				
⑤ 심사청구의 취지		피청구인이 2022년 ○월 청구인에 대하여 한 배치처분에 대하여 변경을 구함				
⑥ 심사청구의 이유		취지에 해당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⑦ 기타입증자료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담임 의견서, 진단서 등				
⑧ 근거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위와 같이 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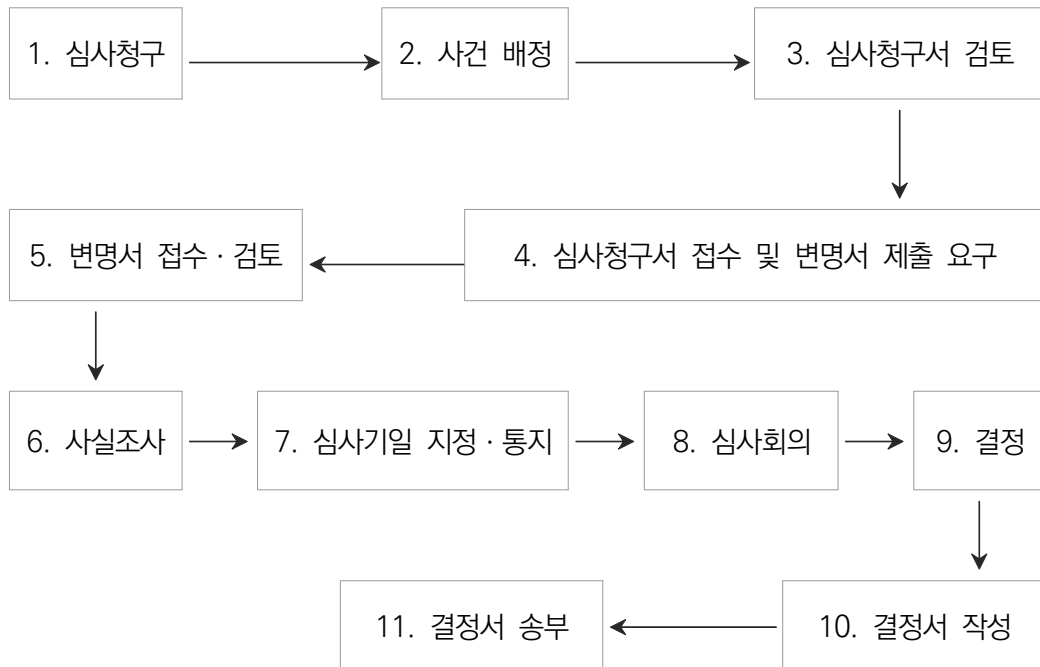
(뒷면)

1. 심사청구서 작성요령

- ① 사건명: ○○ 처분 취소 청구
- ② 피청구인: ○○ 교육지원청 교육장(경기도교육청 교육감)
- ③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내용: 년 월 일자
○○ 처분
- ④ 심사청구의 취지: 피청구인이 년 월 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
처분에 대하여 이의 취소를 구함
- ⑤ 심사청구의 이유: 청구의 취지가 인용될 수 있도록 원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
는 점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기술
- ⑥ 기타 입증자료: 본 건과 관련있는 각종 증거 및 참고자료

※ 심사청구 이유 및 입증자료 내용이 많을 때는 목록만 기재하고 첨부 자료로 제시 가능

2. 심사절차



서식 10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에서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15조, 제16조에 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를 위하여 귀하의 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이용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수집·이용 목적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 특수교육 관련 업무 추진
수집·이용 항목	- 일반개인정보: 본인 및 보호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소속(학교명, 학년, 학과) - 민감정보: 장애인복지카드, 진단서 사본, 행동관찰(동영상 촬영) 외 기타 보호자 및 학교가 제공하는 자료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초·중·고등교육법 제106조의3에 근거하여 수집
수집·이용 보유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업무를 계속하는 동안 및 배치교에 재학 중인 동안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개인정보가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업무처리 및 관련서비스의 제공, 관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

동의 ☐

미동의 ☐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동의 ☐

미동의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및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15조, 제16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아래와 같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공받는 기관	경기도○○교육지원청, 원적교, 배치교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제공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일반개인정보: 본인 및 보호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소속(학교명, 학년, 학과) - 민감정보: 장애인복지카드, 진단서 사본, 행동관찰(동영상 촬영) 외 기타 보호자 및 학교가 제공하는 자료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초·중·고등교육법 제106조의3에 근거하여 제공
수집·이용 보유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업무를 계속하는 동안 및 배치교에 재학 중인 동안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개인정보가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업무처리 및 관련서비스의 제공, 관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동의 ☐

미동의 ☐

년 월 일

학생명

(서명 또는 인)

보호자명

(서명 또는 인)

경기도교육감(경기도○○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서식 11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보고서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보고서

성 명 : 성 별(남, 여)
 주 소 :
 생년월일 : 년 월 일생
 현재소속기관: 학교 급(과정) 제 학년 재학(졸업)

진단·평가 실시 결과

진단·평가 검사도구 등	검사 일시	검사결과
KEDI-WISC III		
사회성숙도		
기타(관련검사도구명)		
행동 관찰 등		

진단·평가 실시 결과에 대한 종합 의견

※ 상기 양식은 (예시안)이며 장애특성에 따라 양식의 변경 및 검사도구 등이 다르게 적용되어야 함
 〈특수교육대상자 선별검사 및 진단·평가 유형 참조〉

※ 개인별 평가검사지 표지 사본 첨부

- 사본은 지역교육청 담당장학사 원본대조필 날인되어야 인정
- 검사자 사인, 진단·평가 점수, 진단·평가 의견란이 기록된 검사지 표지

장애유형 및 교육적 지원 내용

장애유형	특수교육지원 (배치, 통합, 기타)	진로 및 직업교육	특수교육지원 관련서비스	기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5항에 따라 진단·평가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단·평가팀장 ○○○

경기도교육감(경기도○○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개요

진단·평가

선정·배치

특수교육지원청영양실

참고자료

서식

Q&A

서식 12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통지서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통지서

교부번호: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여부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00장애) ※ (또는) 특수교육대상자로 미선정
☐ 교육지원 내용	- 특수교육지원(배치유형) - 특수교육관련서비스(방과후 및 치료지원) - 진로 및 직업교육(진로상담 및 교육) - 기타(보호자상담) ※ 필요시 행동지원 등 교육지원 내용 추가 기술 가능
☐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을 받을 권리	- 무상교육: 전공과와 만 3세 미만 - 의무교육: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 (유치원 ~ 고등학교 과정)
☐ 보호자의 권리·책임	- 보호자는 의무교육 기간 동안 특수교육대상자를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과정에 취학시켜야 함

성 명:

성 별(남, 여)

주 소:

생년월일: 년 월 일

현재 소속기관: 학교 급(과정) 제 학년 재학(졸업)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5항에 따라 진단·평가 결과를 통지합니다.

교부자서명 ㉠

년 월 일

경기도교육감(경기도○○교육지원청 교육장) ㉠

서식 13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결과 통지서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결과 통지서

교부번호:

배정학교

학교 과정 제 학년 (학급)

성 명:

성 별(남, 여)

주 소:

생년월일: 년 월 일생

현재 소속기관: 학교 제 학년 재학(졸업)

위 학생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위의 학교로 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교부자서명 ㉠

년 월 일

경기도교육감(경기도○○교육지원청 교육장) ㉠

개요

진단·평가

선정·배치

특수교육지원청위원회

참고자료

서식

Q&A

서식 14

특수교육대상자 취학유예, 유예, 면제 승인 통지서

특수교육대상자 (취학유예, 유예, 면제) 승인 통지서

특 수 교 육 대 상 자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장애유형				연락처	
	주 소					
	소속학교		학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특수교육운영위원회(년 월 일) 개최 결과,

특수교육대상자 ____ 학생의 ____ 학교 (취학유예, 유예, 면제) 신청이 0000.00.00.~

0000.00.00.까지(면제 시 삭제) 승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경기도교육감(경기도○○교육지원청 교육장) 인

서식 15-1 가해학생 전학 학교 배정 요청서(고등학교)

가해학생 전학 학교 배정 요청서

요청자		학교명		직위 교장		성명	
전학대상자	주소						
	학교명		학년	학년 반		과	
	성명		성별		생년월일	년 월 일	
	전학사유				특수교육 대상자여부		
	재심 및 행정심판 청구여부 등						
보호자	성명				휴대폰 번호		
	현주소 : 우편번호 :						
피해학생 소속교		피해학생 실제거주 주소 (번지수까지 상세히 기재)					
지망 정보	지역명 지망 학교	지역명 지망 학교	지역명 지망 학교	지역명 지망 학교	지역명 지망 학교		
	○○○지역명 ○○○고등학교						
재학 증명	위 지원자는 20 년 월 일 ()중학교를 졸업하고 20 년 월 일 본교에 입학(전입학)하여 본교(인문고 주간부, 야간부(과, 계열)(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형 공, 사립고) 제 학년 반에 재학하고 있음을 증명함.						
	202 년 월 일 ()고등학교장						
	우편번호 □□□-□□□ 시(도) 구(군) 전화번호 FAX 번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 및 동 시행령 제20조 의거 상기와 같이 전학하고자 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년 월 일 경기도교육감(경기도○○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개요

진단·평가

선정·배치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양지원

학교지원

서식

Q&A



가해학생 전학 학교 배정 요청서(초·중학교)

요청자		학교명	직위		성 명
			교장		
전 학 대 상 자	주 소				
	학교명		학년	학년 반	
	성 명		성별		생년월일 년 월 일
	전 학 사 유				특수교육 대상자여부
보 호 자	성명				휴대폰 번호
	현주소 : 우편번호 :				
피해학생 소속교		피해학생 실제거주 주소 (번지수까지 상세히기재)			
지망 정보	지역명 지망 학교	지역명 지망 학교	지역명 지망 학교	지역명 지망 학교	지역명 지망 학교
	○○○지역명 ○○○학교				
재 학 증 명	위 지원자는 20 년 월 일 본교에 입학(전입학)하여 본교 제 학년 반에 재학하고 있음을 증명함. 202 년 월 일 ()학교장 직인 우편번호 □□□-□□□ 시(도) 구(군) 전화번호 FAX 번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 및 동 시행령 제20조 의거 상기와 같이 전학하고자 하오니 배정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년 월 일 경기도교육감(경기도○○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서식 16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 보고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 보고서

1	학교명	○○○○학교		2	보고 일시 (위원회개최일)	2022.4.13.(수) 〈202.4.12.(화)〉	
3	관련학생	성명	△△△	학년 / 반	2 / 1	성별	남 / 여
		성명	○○○	학년 / 반	2 / 5	성별	남 / 여
4	사안유형	신체폭력(금품갈취, 따돌림) - 주 사안을 적고 ()안에 추가 사안 기록					
5	사안 내용 (간단히)	누가	○○○가 △△△에게				
		언제	2022년 4월 6일 수요일 11:00~11:10				
		어디서	○○학교 3층 동편 남자 화장실(구체적인 장소 기재)				
		무엇을/ 어떻게	4월 6일(화) 3교시 후 화장실에서 ○○○와 △△△가 서로 장난을 하다 ○○○가 △△△의 등을 먼저 1대 때렸고, 이에 △△△가 발로 ○○○의 얼굴과 다리를 5~6차례 폭행함				
		왜	서로 별명을 부르다가 정도가 심해져서				
6	학생상태	피해학생(신체적·정신적) ○○○- 왼쪽 눈가 부분이 찢어져 10바늘 치료함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후회함					
		가해학생(신체적·정신적) △△△- 얼굴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약지손가락에 찰과상을 입음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7	조치	피해학생	지속적인 관찰과 심리상담 실시				
		가해학생	사회봉사 5일 및 특별교육 6시간 조치 (학부모 특별교육 6시간 조치) ※ 서면사과, 특별교육, 퇴학을 제외하고 모든 가해 학생 및 학부모 특별교육 의무)				
8	사후계획	피해학생	피해학생이 보복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가해학생	보복행위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상담 실시				
9	참고사항	법적인 소송 없고 가·피해학생 학부모간 합의서 작성					
10	작성자	성명	(학교폭력책임교사)				
11	보고자	성명	(교장)				

개요

진단·평가

선정·배치

특수교육지원청위원회

참고자료

서식

Q&A

서식 17

정원외 관리 대상자 현황 보고 공문(예시)

수 신 : 해당 교육(지원)청

제 목 : 특수교육대상자 정원 외 관리 현황 보고

1.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2. 본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정원 외 관리 현황을 보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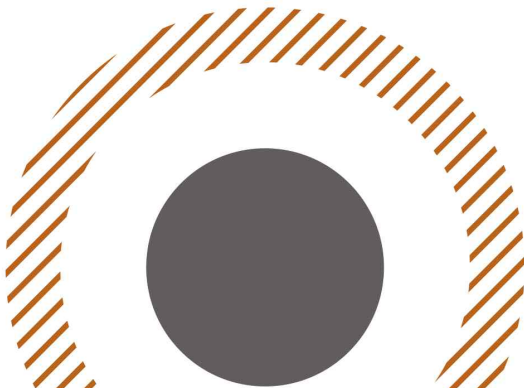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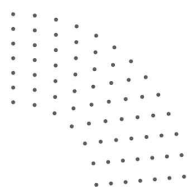
순	학생명	학년	생년월일	성별	장애 유형	배치 유형	정원 외 관리 사유	정원 외 관리 일자	비고
	○○○				※ 특수교육법 상의 장애명	특수 학급	기타 장기결석으로 수업일수 1/3 이상 결석	0000.00.00 ~ 0000.02.28	

끝.

VII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매뉴얼

Q & A



특 수 교 육 대 상 자 진 단 · 평 가 및 선 정 · 배 치 매 뉴 얼

VII. Q & A

VII

Q & A

개요

진단·평가

선정·배치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참고자료

서식

Q&A

신규

1.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학생도 특수교육대상자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15조 2항에 따라,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고등학교 과정은 경기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중학교 과정 이하는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여부가 결정됩니다.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배치 유형에 따라, 특수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배치

2. 순회학급 배치를 위한 입증자료는 무엇인가요?

장애정도가 심하여 장·단기의 결석 불가피하거나 이동이나 운동기능이 심한 장애로 인해 각급 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예시로는 복지카드 사본(뇌병변장애 중증 등)나 의사 소견서, 학부모/교사 의견서 등의 서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순회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면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순회학급 배치가 가능합니다.

재배치

3. 고등학생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경기도에서 타시도로 재배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이미 타시도로 이사를 간 상황인데, 재배치 신청을 지역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 해당 도교육청으로 동시에 제출해도 되나요?

고등학생 재배치의 경우, 소속교에서 소속 지역교육지원청과 경기도교육청으로 재배치 서류를 제출하여 경기도교육청에서 재배치를 희망하는 시도로 재배치 서류를 이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거주지를 이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재배치가 이뤄져야 할 시, 우선 재배치를 희망하는 도교육청과 협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협의가 되었다면, 소속교에서 소속 지역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 재배치를 희망하는 도교육청으로 동시에 공문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취소

4. A고등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는 2022년 4월 20일 학교에 특수교육대상자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학교에서는 4월 21일 교육지원청 및 경기도교육청으로 해당 신청서를 공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이후 4월 28일에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취소 승인 공문이 도착하였습니다. 이 때 학교는 행정 절차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학교에서는 취소 신청서가 접수된 4월 20일부터 특수교육 지원이 우선 종료됨을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이후 승인이 최종 결정된 4월 28일, 보호자에게 특수교육대상자 취소를 신청한 4월 20일 기준으로 승인되었음을 안내하면 됩니다.

취소

5. B특수학교 중학교 과정에 재학 중인 C학생의 보호자가 특수교육대상자 취소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어떤 절차로 진행을 해야 하나요?

특수학교에 배치 된 특수교육대상자는 소속교에서 직접 취소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우선 학생의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중학교로 재배치 받아야 하며, 이후 특수교육대상자 취소를 신청하도록 안내하면 됩니다.

재지정

6. D초등학교 일반학급에 재학 중인 발달지체 E학생이 2023년 7월 장애유형 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진단·평가 결과 장애 유형별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을 사유로 최종 기각처리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학생은 언제까지 특수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학생의 교육적 지원은 2024년 2월 29일까지 유지되며, 이후 2024년 3월 1일부터 종료됨을 안내하면 됩니다.

유예

7.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정원외 학적 관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정원 외 학적 관리란「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29조에 의거하여 입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이 의무취학 기간 내에 취학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학교에서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정원 외 학적 관리가 될 경우, 일반학생에 준하여 분기별 지속 관리를 해야 합니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경우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에 따라 유예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장기결석 하여 정원 외 관리를 하는 경우 교육(지원)청에 정원외 학적 관리 현황을 업무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심사청구

8. 학교에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하였을 때 해당 학교의 장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해당 특수학교가 교육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종류와 배치를 요구받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종류가 달라 효율적인 교육을 할 수 없는 경우에만 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교육대상자 배치에 대해 학교의 장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재배치를 요구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가 해당학교에서 3개월 이상 학교생활에 적응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때는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매뉴얼

지도위원

한규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장)
김경숙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장학관)
박신영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장학관)

기획위원

이재호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장학사)

집필위원

전봉철 (양평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김명곤 (경은학교 교사)
배한빈 (김포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양승진 (의정부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이향옥 (고양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이수연 (구리남양주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문해성 (양평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김동현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주무관)

검토위원

김수현 (안양해솔학교 교감)
이경선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장학사)
주재승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장학사)
정현철 (양주도담학교 교사)
정상필 (포천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최상돈 (구리남양주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이용복 (수원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이수용 (수원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발행정보

발행일 2023년 2월
발행인 임태희
발행처 경기도교육청 (<http://www.goe.go.kr>)
인쇄처 디자인세창 (1544-1466)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매뉴얼

